양도소득세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글 | 정태화 세무사

상속이 발생하면 합리적으로 재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1. 상속순위는 이렇게 파악한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민법은 상속 1순위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태아를 포함)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미혼 또는 기혼, 분가 · 입양 등에 의해 다른 호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따라서 입양자도 시집간 따로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 민법은 직계비속이 많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최근친인 자녀가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2명과 손자 2명이 있는 경우, 자녀 2명이 최근친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2명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 · 자녀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일단 아버지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손 ·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에 의한 대물림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단,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대를 이은 상속은 문제가 없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한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이 2순위자가 된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3순위, 4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순위는 4촌, 마지막 순위는 국가가 해당한다.

2. 상속재산 분배방법은 이렇다.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의해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분할 그리고 법정상속으로 나누게 된다.

(1) 유언 또는 사인증여에 방법

유증(遺贈)은 유언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내가 죽거든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인증여(死因贈與)라는 것이 있다. 이 방식은 증여자의 생전에 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인증여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유증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배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의 권리가 제한된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유류분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배우자 및 자녀)~1/3(형제자매)이 된다.

(2) 협의분할 방식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유증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끼리 자유의사대로 협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배분방식

유증 등이 없고 협의분할에 의해 재산이 분배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간에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지분을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지분은 다음과 같다. 만일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면 자녀 1의 법성상속분은 2억원(=7억원 × 1÷ 3.5)이 된다.

한편 상속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한 자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리고 공동상속의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3. 상속분재 예방은 이렇게

첫째,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

유언장을 작성하면 이 유언장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배된다. 그런데 유언장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 전문가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다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해 두면 상속분재의 소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여할 때는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증여를 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가 혼미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체결되면 증여 무효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법정상속지분율로 분배하면 재산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상속재산을 자유의사대로 협의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칫 상속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